대전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호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대전광역시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주 요 업 무
정책지원관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지 방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 2년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규

가.「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560호)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다.「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라.「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회규칙 제3383호)
마.「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548호)

3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최종(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해당자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 용 예정분야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민간연구소 포함) 등에서의 지방자치, 지방행정,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 조사 · 분석 · 강의 및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분석, 의정활동 지원 등의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 *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공고일 기준 ※ **[경력요건]**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경력요건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과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등)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평일 9:00~18:00, 주40시간(1일 8시간)

○ **(연봉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용직급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86,606천원	57,708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임용 다음해부터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및·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②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일정 ※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공 고 기 간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6. 11. 13.(금) ~ 11. 23.(월)	'26. 11. 23.(월) ~ 11. 25.(수)	'26. 12월 초 〈예정〉	'26.12월 중 〈예정〉	'26.12월~'27.1월 중 〈예정〉

1)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daejeon.go.kr/svc/cns/AnnounceList.do)에 게시

2) 면접시험 일정,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4)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5)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6. 11. 23.(월)~11.25.(수) /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은 제외

다. 접수장소: 대전광역시의회 4층 의정관(인사팀) / ☎042-270-5123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정관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7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

※ 본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1호)**
②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2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7천원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 9번 창구) **※ 우편접수 시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3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 계속)

(제출서류 - 계속)

구 분	내 용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호)**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6호)**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주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별지 제6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⑧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호)** ※ 본인 자필로 서명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8호)** ※ 본인 자필로 서명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 자격과 직접 관련된 자료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착오기재,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및 연락 불능**(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 안내사항, 합격 여부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라.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소식』란에 공고합니다.

자. 본 시험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관 인사팀(☎ 042-270-5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1부.

[별첨] 별지서식(제1~9호) 각 1부.

<붙임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부서)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	1명

주요업무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필요역량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대응력, 창의력
필요지식	○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지식 ○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및 업무에 대한 법제 전문지식 ○ 대내외 입법정책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연구 지식 ○ 정책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민간연구소 포함) 등에서의 지방자치, 지방행정,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 조사 · 분석 · 강의 및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분석, 의정활동 지원 등의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 *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공고일 기준 ※ **[경력요건]**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경력요건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